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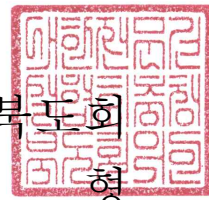
수신 : 회원제위

참조 :

제목 :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미달 실태조사 안내

-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 2. 최근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미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3. 회원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등록업종별 필수 기술인력 보유 여부
 - 나. 기술인의 실제 상시근무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
 - 다.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인정 여부
 - 라. 다른 업체와의 이중 취업 여부
 - 마. 퇴직 기술인 발생 여부 및 대체 기술인 충원 여부
 4. 기술인의 퇴직, 4대 사회보험 미가입, 이중취업 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인의 형식적 등록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5.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.
 6. 다만, 기술인의 사망·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을 충원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 7. 회원사에서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, 실태조사 대상 통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와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회 장 류 근 형



담당자 부장 김영은 실장 하재중

시행 전건협 충북 제 601 호 (2026. 9. 18)

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(용암동) 전문건설회관 7층 / <http://www.chungbuk.kosca.or.kr>

전화 043-294-7671 전송 043-294-7675 / 전자우편